스멀스멀 '빈대 공포'에…시민들 "지자체 적극 방역 나서야"

택배 상자 집 밖에서 뜯고 지하철 좌석 앉기 꺼려…숙박업소 초긴장
광주시 신고창구 개설하고 13일부터 4주간 집중점검 방제기간 운영

#. 유경민(32·광주시 광산구)씨는 최근 택배 상자를 일일이 아파트 현관 밖 복도까지 들고 나가 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혹시나 택배상자를 통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택배 상자에도 빈대나 빈대 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불안한 마음에 집 안으로 택배 상자를 들여놓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유씨는 "광주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다지만 국제 택배를 통해서든 다른 지역의 택배를 통해서든 빈대가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방제를 해 줄 것도 아니니 나부터 나서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9일 기준 광주·전남에서는 단 한건의 빈대발생 신고도 접수 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사례가 잇따르자 광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인천, 대구의 숙박업소·대학 기숙사, KTX 등지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모기보다 피해가 크고 방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년째 온라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상익(30·광산구 운남동)씨도 최근 식료품을 수령하면서 배달 가방을 한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골판지 상자를 통해서도 빈대가 옮길 수 있다는데, 직물로 만들어진 식료품 배달 가방에는 빈대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을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이씨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가방을 살균세척을 하는 등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빈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KTX를 이용했다가 옷가지에 빈대가 옮겨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글이 확산되면서다.

최혜지(여·27·북구 신용동) 씨는 "평소 연주회, 공연 연습 등으로 상무역에서 송정역까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빈대가 옮을까봐 지하철 좌석에 앉는 것도 찜찜하고 집에 도착하면 바로 샤워를 해 씻어낸다"고 말했다.

지역 숙박업소들은 초긴장 상태다. 광주 내 숙박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했다가는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의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경기에 젊은 층 이용객이 줄고 있어 속상한데, 빈대 확산 논란까지 퍼지니 답답하다"며 "평소보다 더 신경써서 방역을 하며 빨리 상황이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김준 대한숙박업협회 광주시지부 사무처장은 "아직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빈대 대응 방안 매뉴얼을 정해주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다"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결국, 지자체도 빈대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는 9일 광주시청에서 5개 자치구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빈대 예방·차단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고 및 안내 창구는 110(국민콜) 및 자치구 보건소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5개 자치구 보건소에게 빈대 발생 예방·홍보·상담 창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오는 13일부터는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을 운영하며 숙박시설·찜질방 등 934곳, 버스·전동차 1022대를 대상으로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등에는 광주시 감염병지원단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게시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자치구별 빈대 발생 통계를 취합할 방법을 정하고 새로 제작한 빈대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대로 광주시는 본격적인 대책 회의를 열고 각 자치구 실무부서별 역할 및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9일 정부 합동대책본부가 파악한 지난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는 30여건이다. 광주·전남에서 접수된 빈대 발생 신고는 없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구 틈새 살피고 60도 이상 고압스팀 분사 효과적

빈대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은

빈대 잡으려면 속담처럼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야 할까.

빈대가 광주·전남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빈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개한 '빈대 정보집'에 따르면 빈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침대매트리스나 가구 틈새, 소파, 책장, 침구류, 옷 등을 살펴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 등 흔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빈대는 서식지 주변에 검은 곰팡이처럼 생긴 배설물 흔적을 남기며. 노란 탈피 껍데기를 남기는 경우도 많다. 또한 빈대는 특유의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를 풍기므로 이를 통해 서식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빈대에 물리면 모기에 물린 것과 비슷한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는데, 2~3곳을 연달아 물면서 일렬 또는 원형 자국이 생기기도 한다.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드물게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 고열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물린 이후에는 물린 부위를 긁지 말고 물·비누로 씻은 뒤 의사·약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가려움증은 1~2주 내에 회복되며, 가려움이 심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크림과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야 한다.

방역전문업체들은 "빈대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집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침대, 의자, 장롱 등 모든 가구를 방 한 가운데로 모아 놓고 고압스팀(60도 이상)을 분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빈대 방제에 효과가 있는 살충제를 일주일 2-3회씩 최소 2주 이상 뿌려 줘야 한다.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빈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트랩(끈끈이 덫)을 방 곳곳에 설치하고, 빈대가 재발했을 경우 방제 작업을 장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침대매트리스, 이불, 섬유질 옷 등은 건조기를 이용해 60도 이상의 온도로 소독해야 효과가 있다.

방역전문업체 관계자는 "숙박업소 등에는 외국인들이 가져온 짐이나 가구 등으로부터 빈대가 옮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빈대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빨갱이 몰려 집주인에게 쫓겨나고 50여년간 고통의 세월"

무죄 동림호 선원 억울함 토로

"'빨갱이'라며 집주인이 쫓아내 방도 못구하는 세월을 보냈어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평생을 빨갱이로 낙인찍혀 살아온 동림호 선원 5명이 9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50여년간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이날 재심에는 동림호 선원 신명구씨만 법정에 섰다. 나머지 4명은 작고해 유가족이 참석했다.

신씨는 "당시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며 "지금 생각하기도 싫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재판을 받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미 사망한 선원의 딸은 "아버지는 사건 이후 고통 속에서 살다가 6년만에 돌아가셨다"면서 "아버님이 살아계셔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선원의 배우자는 "심지어 7살짜리 어린 아이가 할머니는 빨갱이라고 했다"면서 "주민등록에도 납북자 가족을 표기하는 '112'라는 번호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탄했다.

동림호 선원과 유가족들이 9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와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1971년 5월20일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다 북한경비정에 납치돼 이듬해 5월 10일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1973년 9월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1년(집행유예 3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50여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피고인 측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50여 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진술은 생명, 신체에 대한 강압에 따른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먼저 무죄판결을 받은 동림호 선장 신평옥씨도 법정을 찾아 이들과 무죄 선고의 기쁨을 나눴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별거 아내 집에서 차키·통장 가져왔다면?

1심선 남편 집유…2심선 "공동생활 장소 출입 불법 아냐" 무죄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가져간 차키와 통장을 되찾기 위해 아내가 자고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 처벌을 받을까.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새벽 2시20분께 순천시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2층 안방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지난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뒀다. 불화로 B씨가 지난 2020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반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이 순천의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를 시작했다.

둘 사이의 갈등은 물품을 가지러 서로의 거처에 드나들면서 증폭됐다.

B씨가 지난 2021년 3월 18일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A씨 소유의 차키 등을 가지고 나왔다.

A씨는 차키와 가방 등을 절취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모두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했다.

결국 A씨는 다음날 새벽 물건을 찾기 위해 B씨의 방을 찾았다.

잠에서 깬 B씨는 '별거하던 남편이 몰래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며 "B씨 주거지는 공동주거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생활형태를 봐도 공동 점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와 B씨가 이혼소송 중이나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